

검 토 보 고 서

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

양 주 시 의 회
전문위원 김형열

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

□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

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
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

□ 본조례 제정 이유는

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
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
를 실행하기 위한 법의 위임사항의 구체적 명시와
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
· 운영방법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

□ 주요 내용은

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

□ 본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

○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

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

- 법령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방법과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사항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있습니다
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46조 제3항에서 위임된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데 있어서,
안 제1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의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○ 본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
주민의 예산 제안에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수
있습니다

그러나 본 제도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
주민이 감시하는 제도로 혼동 되어서는 아니 될것
이며, 본제도를 감시 제도로 오인 한다면 이는
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
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